

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[별표 11]

수수료(제40조제1항 관련)

납부 대상자	금액
1.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가) 필기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나) 실기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	4,800원 64,800원
2.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	14,400원(교재비를 포함한다)
3. 법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, 재발급 또는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람 가) 면허증의 신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 나)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람	5,000원 4,000원
4. 법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·변경등록 및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등을 신청하려는 자 가) 수상레저사업의 신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나) 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다) 수상레저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 라) 수상레저사업의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자	20,000원 10,000원 없음 20,000원